

담양군 노인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

「담양군 노인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1. 13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노인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고령화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노인의 위생 관리 및 사회적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존엄성 보장을 위해 이·미용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규정(안 제1조)

나. 지원 대상자, 지원 기준,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, 지원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안 제5조)

• 이·미용권 반기별 신청시 3매 또는 연도별 신청시 6매 지급

다. 이·미용업소 업무 협약(안 제6조)

라. 이·미용권 사용, 지원사업비 정산, 환수처리, 수불관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안 제10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11. 13. ~ 11. 18.(5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노인 이·미용지원비 지원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노인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이·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자) ① 노인 이·미용비의 지원대상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는 지급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록상 8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.

②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.

제3조(지원기준) 노인 이·미용비는 이·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·미용권은 이·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어르신 이·미용권을 반기별 3매 또는 연도별 6매를 지급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.
2. 이·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제4조(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)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·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군

수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한다.

② 지원대상자가 노인 이·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방법 및 시기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·미용권을 제작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이·미용권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읍·면장에게 배부하고 읍·면장은 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·미용권을 매 반기 첫 달 5일부터 읍·면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,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.

제6조(업무협약)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이·미용업소의 사업주와 이·미용권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7조(이·미용권 사용) ① 이·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며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·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이·미용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.

② 이·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8조(지원사업비 정산 등) ①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·미용업소 대상으로 「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 이·미용비 청

구서, 사용한 이·미용권, 사업자등록증, 신고필증사본(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) 및 통장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청구일은 다음 분기 첫 달 15일 이내로 한다.

제9조(환수처리 등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제10조(이·미용권 수불관리) 읍·면장은 이·미용권 배부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이·미용권 수령명부에 지급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○ 어르신 이·미용권

〈앞면〉

년도 NO. _____
어르신 이·미용권
敬 老
담 양 군 수

※ 앞면에 담양군수의 확인 직인이 있어야 함

〈뒷면〉

유의사항
○ 이·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○ 사용기간 : 20 . . . ~ 20
○ 사용업소 : 관내 업무협약된 이·미용업소

[별지 제2호서식]

노인 이·미용권 수불대장

주무관	팀 장	과 장	결 재

구 분	일련번호	일 자	수 입	지 급	잔 량	비고
계						
담양읍						
봉산면						
고서면						
가사문학면						
창평면						
대덕면						
무정면						
금성면						
용면						
월산면						
수북면						
대전면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노인 이·미용비 청구서

업 소 명		대표자		전화번호	
사 업 명	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사업				
청구금액	금 원(금 원)				
이용매수	매				
예금주명		금융기관		계좌번호	
사업기간	20 . . . ~ 20 . . .				
담양군 노인 이.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 20 . . . 청구인 (인) 담 양 군 수 귀하					
구비서류 1. 사용한 이.미용권 2.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(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) 3. 통장사본	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노인 이 · 미용권 수령명부

(음면)

(20 년 상반기 / 하반기)

[illegible]